



항조우 징다 전자 기술공사 VS 천아이핑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4)浙民三终字第156号
판결 일자	2004년 12월 27일	판결 결과	상소 일부인용(권리자 일부 승)
원심원고(상소인)	항조우 징다 전자 기술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천아이핑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0조, 민법통칙 제4조, 제5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53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2조		
영업비밀	LED 광속 관련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상품설계, 프로그램, 상품 배합, 제작방법, 관리비결, 공급원 상황, 상품판매 전략, 외주 생산 업체, 협력 제작 업체 등)		
키워드 (Keyword)	비공지성(不为公众所知悉), 고객자료(客户资料), 상업비밀의 누설(披露商业秘密), 경업금지약관(竞业限制条款), 증거부족(证据不足)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항조우 징다 전자 기술공사(이하 '징다공사')는 1992년 5월 13일 설립되었고, 전동 모니터, 측정기구 및 장비 세트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징다공사 생산의 LED 광속은 우수 저장성 및 국가급 우수상품으로 평가 받았다.

원심 피고 천아이핑은 징다공사와 경업제한 약정이 포함된 노동계약을 맺고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계약 만료 후, 천아이핑은 징다공사를 떠났고, 쌍방이 자료 등을 교환하였으나, 천아이핑이 징다공사의 고객명단을 2부 가지고 갔다.

2004년 3월 24일, 항조우시 공상행정관리국 서호 분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천아이핑이 장소를 임대하여 LED 광속을 생산하는 것이 적발되어 쌍방 분쟁이 발생하였다. 징다공사가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징다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상업비밀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공지성'은 피상소인이 입증해야 한다.

기술비밀을 LED 광속 생산 공정에 관한 것이다.

천아이핑이 퇴직 당시 무단으로 고객기록을 가져간 것은 불법적인 사용인 동시에 자체로 권리침해행위이다.

원심은 경업금지 약정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의 비밀보호 약정은 무효이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천아이핑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천아이핑은 징다공사에서 판매업무를 맡았지 기술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기술비밀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양 제품은 일치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LED 광속 생산공정이 공중에 알려진 것인지는 피상소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천아이핑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징다공사의 LED 광속 생산공정은 상업비밀이 속한다. 그러나, 징다공사가 천아이핑의 LED 광속 생산 공정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술비밀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고객명단이 경영비밀에 해당하고, 천아이핑이 퇴직 당시 독단적으로 자기가 보관하는 고객명부를 가져갔고, 이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속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1관 제1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징다공사의 상소 이유 중 기술비밀 침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나, 경영비밀 침해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며, 침해행위 정지, 고객자료 반환, 인민폐 1만 위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05 Key Point

중국의 판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판결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상급 법원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나, 상소심에서 상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판결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분쟁의 초동대응을 잘 하고, 나중에 상급심에서 결론을 바꾸려하기 보다는, 1심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시사한다.
